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26. 04.13.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목차

목차	2
요약	3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4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5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7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9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11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12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14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16
▣ 참조1. 000시(구) 시민참여(주권)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안)	19
▣ 참조2. 000시/군/구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25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권력 감시와 주민 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함.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시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를 제안함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시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에는 시민 참여를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시민 참여 기본계획 수립, 독립적인 상설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또한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방안으로는 회의 규칙에 중계 원칙과 영상회의록 게재 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 작성 및 중계 대상을 소위원회까지 확대하며, 회의 비공개 전환 시 사유 기재 및 표결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 됨.
- 지방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은 회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사전 고지 및 방청권 보장,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속기 작성 및 7일 이내 상시 공개 등을 규정함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를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방안은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전국 의무화, 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감사직렬제 전국 도입, 시민감사관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음.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방안은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부적격 시 임명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 함.
- 지방의회 기명투표 실시는 예산안·조례안·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100%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기명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해당 정책을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임. 아울러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시민이 지역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통로는 여전히 빈약함. 공청회·주민설명회 등 법정 참여 절차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업 확정 이후 통보성으로 운영되며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함.
-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공론화, 공청회 등을 각기 다른 조례로 파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이 어떤 경로로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청구, 주민감사, 주민투표 등 일부 직접 민주주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일상적 정책 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시민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 법원 판결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듯, 행정기관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단위에서는 거의 없음. 참여는 있지만 그것이 "권리"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참여 결과의 공개 의무나 반영 사유 설명 의무가 없어, 시민은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음. 이는 시민의 참여 의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됨
- 더욱이 기존 시민참여 절차는 평일 낮 시간, 특정 장소, 공지 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장애인·이주민·노인·청년·저소득층 등 참여약자는 제도가 존재해도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수어통역·다국어 안내·돌봄 지원·교통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

2. 제안 정책

- 시민의 참여권을 법적 권리로 선언
-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다음의 5대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 접근권: 시정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
 - 의견 제안권: 정책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할 권리

- 결과 통보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통보받을 권리
 - 이의 제기권: 참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권리
 - 참여약자 편의제공권: 참여약자로서 접근 편의와 실비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 **4년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 수립 의무화**
 -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1년 이내에 4년 주기의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민선 책임성과 연동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하며,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함.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 평가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독립 상설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기본계획 심의, 공론화 안건 심의, 조례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는 독립 상설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 민간위원 과반 구성: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의무화
 - 위원장 민간 호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여 행정의 위원장 낙점 관행을 차단
 - 행정기관 심의 대행 금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

▣ [참조1.000시\(구\) 시민참여\(주권\)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안\)](#)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은 그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
- 지방자치법은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서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의 시한·범위·방식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4항 등에 따라 각 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3년 전인 2013년 모든 지방의회 회의의 인터넷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2024년 8월에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재권고한 바 있음.
- 하지만 2026년 현재에도 실시간 중계와 당일 영상 공개를 시행하는 의회와 본회의 영상만 수일 후 올리는 의회가 공존하는 등 의회별 편차가 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유사한 규모의 기초의회 사이에서도 공개 수준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는 예산·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의지와 회의규칙 정비 여부에 따른 구조적 격차임.
- 또한 공식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 협의로 예산·조례 등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관행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비공식 협의체를 활용해 회의록 작성 의무 자체를 우회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 전환 요건(법 제75조 단서) 역시 자의적으로 운용이 가능해, 의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비합리적 결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단이 없음.
- 이렇게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지연·누락·선별 공개될 경우 주민의 의정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조차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움.

2. 제안 정책

-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중계 원칙 및 영상회의록 게재 기한 명시

-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는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으며, 충청남도의회 등 중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의회의 경우에도 게재 기한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실시간 중계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 영상 게재 ▲7일 이내 회의록 공개를 표준 기한으로 함께 규정
- 회의록 작성 및 중계 대상을 소위원회로 확대하고 장소관련 제한 삭제
 - 현행 대부분의 회의규칙은 회의록 작성 및 중계 회의 대상을 본회의와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서 상임위·특별위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위원회도 회의공개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 필요
 - 또한 대부분의 회의규칙에서 중계방송의 대상을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로 한정하고 있어, 시스템 미설치를 이유로 한 공개 회피가 가능함. 기술적인 완벽함이나 운영상의 편의보다 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시스템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의에 중계원칙을 적용해야 함.
- 회의 비공개 전환 시 사유 기재 및 표결내용 공개 의무화
 - 현행 지방자치법 제75조 단서 조항에 따른 비공개 요건은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운용되어 자의적 비공개가 가능함.
 -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안건 ▲비공개 사유 ▲각 위원별 공개/비공개 표결 내용을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회의의 의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책임성을 보장해야 함.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는 환경, 교통, 안전, 인허가 등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임. 특히 대부분의 위원회는 외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 운영 과정과 결과는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닌 공론장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개(2025년 10월 기준. 기초 188개, 광역 18개)를 분석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명칭으로 하는 행정 관리형 조례임. 이러한 조례들은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임기, 수당, 서면 결의 등 내부 운영 사항을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은 현저히 부족함.
-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별도의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함. 그러나 해당 조례는 시민 대상 사전 고지, 방청권 보장, 책임성 있는 회의록 공개 등 핵심 장치가 미흡함. 이는 공개 원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시민이 실제로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음.

2. 제안 정책

- 현행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는 별도로,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하여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고지 및 방청을 제도화 하여 시민의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회의 방식 원칙 확립
 - 위원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명시. 서면심의는 천재지변·재난·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위원 전원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의무 기재.
- 회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요건 법정화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정 사유로 한정. 위원장·기관장 재량에 의한 비공개 허용 조항을 두지 않으며, 비공개 결정 시 그 사유를 사전 고지 내용에 포함하여 공표.

- 사전 고지 및 방청권 보장
 -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홈페이지에 공표. 긴급 개최 시에는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 사후 공표. 위원에게는 7일 전까지 일정·안건을 통지하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 비공개 사유는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 공개 회의 방청은 신분증 제시 및 방청권 발급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허용.
- 위원 명단 즉시 공개
 -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당연직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의무 공개. 위원 변동 시 즉시 갱신. 비공개는 다른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
- 회의록 속기 작성 및 7일 이내 상시 공개
 -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되, 회의 명칭·일시·장소·공개 여부(비공개 사유 포함)·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의무 기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비공개 시 사유를 반드시 함께 공개.
- 공개 의무 위반 시 의결 무효
 - 회의 원칙, 회의 공개 원칙, 사전 고지·방청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회의의 의결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개 의무의 실효성 확보.

▣ [참조2. 000시/군/구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단체장이 임명하고 단체장 소속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의 외부 감사가 있으나 그 대상과 빈도는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일상 감사는 내부 감사기구가 담당함. 이 구조에서 감사기구가 단체장을 비롯한 내부 고위층의 비위·낭비·부당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근본 한계를 가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제5조는 자율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명권·예산권·인사권이 모두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선언적 독립성에 그침.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도입 여부와 독립성 수준이 지자체마다 극단적으로 다름.
- 2018년 당시 5개에 불과하던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7년 만에 12개로 확대된 것은 성과이나, 나머지 5개 이상 지자체는 독립제 감사기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국 표준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광역과 달리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률이 훨씬 더 낮음. 게다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라도 독립성 수준은 지자체별로 극명하게 갈림.
- 감사직렬제(감사 전담 공무원 직렬)는 전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단 1곳에만 도입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 미도입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나머지 지자체는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여서, 감사 전문 인력의 독립적 양성과 배치가 불가능함.

2. 제안 정책

- 합의제 감사위원회 전국 의무화
 - 현재 선택 사항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의무화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되, 50만 명 이상 대도시(광역시)는 우선 도입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시민감사관·도민감사관·감사자문위원회를 의결권 있는 합의제 기구로 격상해야 함.

의결권 없는 자문 기구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며 실질적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함.

- 위원장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은 위원장 임명 과정의 민주적 통제에서 시작됨.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현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 시 지방议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의회 동의 절차는 최소한 인사청문(인사청문회 개최, 서면 질의·답변, 의결)을 포함하여야 하며, 의회의 형식적 동의가 아닌 실질적 검증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위원장 의회 동의제를 채택한 지자체(광주·강원·전북·제주·세종)가 모범 사례임.

- 위원 구성에 의회 추천 비율 **1/2** 이상 확보

-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 구성 전반에서 의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전북특별자치도(과반수)와 강원특별자치도(**1/2 이상**)의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위원 중 **1/2 이상**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의회 추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정 정당·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추천 과정에서 성별·전문성·지역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내 추천 절차도 규정해야 함.

- 감사직렬제 전국 도입

- 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은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에도 달려 있음.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감사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압력에 취약하며, 감사 전문성도 누적되지 않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직렬제(감사 전담 공무원 직렬)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감사직렬 직원은 감사기구 외 부서로 전출이 제한되며, 인사 평가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보장해야 함.

- 시민감사관제 의무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와 병행하여, 일반 시민이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민감사관·시민감사관 제도를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해야 함. 현재 제주·전북·전남·충북·인천 5개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나머지 지자체는 제도 자체가 없음.
- 도민감사관은 단순 자문 기능에서 나아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감사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어야 함.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성 부족과 실효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 간 편차도 큼. 조례의 강행 규정 여부, 인사청문 대상과 범위, 연임 시 인사청문 실시 여부, 청문 주관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선택 여부, 검증 항목과 회의 공개 여부, 임명 철회 규정 유무 등 지역별로 차이가 심함.
- 인사청문의 법적 기반과 양적 확대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함.

2. 제안 정책

- 인사청문 대상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확대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실질적 확대
 -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
 - 부여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단체장 측근 인사를 방지하는 장치로 활용
 - 강원도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가 연임될 경우 조례에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연임까지 대상 범위를 넓힘.
 - 정책적 협약 및 운영 개선을 통한 확대
 -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맺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라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해 청문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경기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단체장과 의회 간의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 제도를 운영

- 서울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운영 개선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
- 인사청문 요청 의무화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 법제처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청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상위법을 개정
 - 지방자치법 제 47조의2 제1항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
 - 경기도와 광주시의 경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
 - 인사청문 협약 제도화와 내실화
 -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청문 대상과 범위 협약
- 자료제출 의무 강화
 - 상위법인 인사청문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 인사청문회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보다 인사청문회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거부 명문을 차단
 - 조례를 통해 세부 이행 규칙을 강화
 - 조례에 병역, 재산, 납세, 범죄 경력 등 기본적인 검증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 사항으로 지정하고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여 미제출 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주요 근거로 활용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사례와 같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과 같은 입법 모델을 조례로 적극 수용
- 임명 철회
 - 임명 거부권 제도화
 -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공공기관장까지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약하는 방안
 - 정치적 책임 강화
 -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정치적 부담을 높이는 방안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74조(표결방법)가 신설되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 표결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의원 자격상실 의결, 징계 의결, 재의 요구 의결, 그리고 각종 선거 및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 조례와 회의규칙도 표결방식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허용하는 무기명투표를 제외하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인사·선거, 징계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 의원의 찬반 의사를 회의록에 명확히 남김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 2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무기명투표 관행은 많이 개선되어, 기명투표와 이의유무 표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나, 자신들의 권한과 관련된 안건, 또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예상되는 사안에 경우 기명투표 대신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 특히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허용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 단계에서 무기명투표가 시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상임위에서 무기명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시의회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본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결됨. 또한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는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
- 그러나 무기명투표는 개별 의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주민의 감시권과 알 권리 침해를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욱이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위원회 표결에도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역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기명투표를 통해 찬성·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본 조건임. 이러한 정보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되며,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2. 제안 정책

-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명시된 무기명투표 사안 외에 예산안, 조례안, 각 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를 실시함.
- 상임위 표결 또한 기록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사례

- 용인시의회
 - 회기정보: 제2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2025.12.18.)
 - 안건명: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설명: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 재심의 끝에 가결 처리됨.
 - 결과: 무기명투표 결과, 출석 8인,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됨.
- 창원시의회
 - 회기정보: 제133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5.07.)
 - 안건명: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설명: 해당 조례안은 주민 약 5800여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됨.
- 결과: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 11명, 출석 9명,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됨.

- 대전시의회

- 회기정보: 제26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2022.09.15.)
- 안건명: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설명: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상임위 위원장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및 표결 결과 찬성 둘 반대 3으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이 부결시킴
- 표결 결과: -

- 대전시의회

- 회기정보: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2023.02.08.)
- 안건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 설명: 해당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위원장이 거수표결로 가결했으나 주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최종 가결함
- 표결 결과: 거수표결결과 전체5,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함.

- 충청북도의회

- 회기정보: 제420회 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4.09.11.)
- 안건명: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 설명: 여야 이견으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장이 형평성 발생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투표하였다며 부결시킴
- 표결 결과: -

▣ 참조1. 000시(구) 시민참여(주권)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안)

000시(구) 시민참여(주권)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0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시민참여가 계획·실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에 제도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00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00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그 밖에 시정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의 정책 기획·입안·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그 결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란 시와 시민, 시민사회, 전문가,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책운영 방식을 말한다.
4. "숙의"란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숙고를 거쳐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시민주권"이란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로서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결정하며 감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말한다.
6. "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말한다.
7.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하여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8.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9. "참여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외국인주민, 돌봄부담자, 저소득층 등 시정 참여에 제약을 받기 쉬운 시민을 말한다.
10. "시민사회"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된 법인, 단체, 모임 및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포용성: 모든 시민이 성별, 나이, 장애, 출신,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투명성: 시민참여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충분히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참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3. 숙의성: 중대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거쳐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4. 책임성: 시민참여 결과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미반영 시 그 사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5. 연속성: 시민참여는 단발적 행사가 아니라 계획·실행·평가·환류의 상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6. 협력성: 시민과 행정은 대등하게 협력하여 시정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칙이 시의 다른 조례와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② 속의절차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00시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는 「00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이 조례의 기본이념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 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시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시정의 기획·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청구할 권리
 4. 자신의 참여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5. 차별 없이 참여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시민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시민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참여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를 기획 단계부터 평가·환류 단계까지 모든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집행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이 조례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00시의회에 보고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시민참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약자 지원)

- ① 시장은 참여약자가 시정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어통역, 문자통역, 다국어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참여, 이동편의, 돌봄 및 보조인력 지원, 참여수당·교통비 등 실비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각종 위원회 및 시민주권위원회 구성 시 참여약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원칙)

- ① 시장은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참여가 예정된 회의, 공청회, 공론화 절차의 자료는 해당 절차 개최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의 참여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는 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미반영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시장은 주요 정책별 시민참여 결과와 반영 현황을 매년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4년마다 00시 시민참여(주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체계
 3. 숙의민주주의·시민제안·참여예산·협력적 거버넌스의 연계방안
 4. 참여약자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방안
 5. 시민역량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방안
 6. 평가 및 환류체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시민주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

-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매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00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참여 대상정책 및 참여계획)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시민참여 절차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2.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대규모 재정투입 또는 공공시설 설치·재편과 관련된 정책
 4. 이해관계 충돌 또는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시민참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민참여계획에는 참여목적·대상·방법·일정·자료공개 방안·결과반영 및 공개방안·참여약자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시민참여)

-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위원회는 「00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청회·설명회 개최 사실은 개최 14일 전에 사전 고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렴된 시민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 토론회 청구권)

-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토론회등은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 또는 전자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③ 시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시민주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④ 개최를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⑥ 토론회등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각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토론회등이 실시된 사항
- ⑦ 제6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토론회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제15조(숙의형 시민참여)

- ① 시장은 장기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숙의형 시민참여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숙의형 시민참여의 운영방법, 시민참여단의 구성, 자료제공, 공론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00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숙의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예산제)

-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참여예산의 규모는 매년 시 전체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비율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전년도보다 낮출 수 없다.
-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사업 제안 및 우선순위 결정, 시의회 의견 제출, 집행 결과 점검 등의 권한을 가진다.
- ④ 시장은 편성 결과와 시의회 심의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론화)

- ① 시장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하여 00시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론화 절차의 실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환경시설 입지 사업
 2. 이해관계 충돌 또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장기 정책
 3.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민참여 영향평가)

- ① 시장은 주요 정책 및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시민참여권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제안 플랫폼)

- ① 시장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토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플랫폼에는 정책제안 접수, 온라인 토론 및 전자서명, 처리상황 및 반영결과 공개, 축적된 제안과 데이터 공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장은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 지원)

-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역 자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예산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결과가 관련 행정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시민주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00시 시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4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 및 정책 반영 여부
 3. 시민참여 제도의 평가와 개선
 4. 숙의민주주의·참여예산·협력적 거버넌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 ⑤ 민간위원은 시민사회·학계·언론·청년·장애인·외국인주민 등 각 분야 대표 및 시민참여·숙의민주주의·갈등관리·행정혁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00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할 수 없다.
- ⑦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의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⑧ 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 및 역량강화)

-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숙의기법, 갈등조정, 참여예산,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실태조사 및 평가)

-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수 있다.

제24조(회의공개 원칙)

시와 시민주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시민참여 관련 회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정, 안건, 결과 및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시민주권위원회로 본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맞게 구성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 참조2. 000시/군/구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000시/군/구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0(도/시/군/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0(도민/시민/군민/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000(도/시/군/구)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합의제 기구 및 기관을 말한다.
2. 회의록이란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의 장소, 일시, 참석 위원 명단, 심의 안건,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000(도/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원칙)

①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2. 서면심의 개최에 대해 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 제5조의2 1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에 비공개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회의의 고지 및 방청)

-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의3 (공개 의무 위반 시 회의 무효)

제4조(회의의 원칙), 제5조(회의의 공개), 제5조의2(회의의 고지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회의는 그 의결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회의 사전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 ①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의 경우, 변경된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포함)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도/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비공개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여자치연대

**6·3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발행일 2026. 04. 13

발행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이은미 사무국장 02-723-5302 local@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Local

